

영등포구의회  
제 18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

2015. 4. 2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## 1. 경 과

의안 제55호로 2015년 4월 21일 윤준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공무 수행차량 및 대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동 방역 및 동 방법 순찰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대민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확대  
(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<비고> 22호. 신설)

가. 공무 수행차량

나. 동 방역 및 동 방법순찰차량

-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동별 각 1대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5. 4. 8 ~4. 14) : 의견 반영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수행차량 등 대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대민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  
공무 수행차량,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주차장 관리 운영자에게 사전에 등록된 동별 각 1대 차량으로 규정함.
- 동 자율 방역단과 동 자율 방범대는 감염병 예방과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,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등 「자원봉사 활동기본법」에서 정의하는 자원봉사 단체로 볼 수 있음.

- 따라서,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있는 해당 단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.
  
- 다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,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.
  
-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고 시설관리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으나,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과 주차장 관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예측을 더욱 심도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 관 련 법 령

## ○ 「주차장법」

**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[제8조제1항](#)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[제2조제22호](#)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6.8.>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[제8조의2제1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"주차요금등"이라 한다)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3.22.]

**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** ① [제13조](#)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[전문개정 2010.3.22.]